

첨부1. 인증라벨 신청안내서.

(사)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BP 라벨 사용 안내



**(사)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Korea Bio Material Packaging Association

[www.biopack.or.kr](http://www.biopack.or.kr)

# - 목 차 -

## 1. 회원 가입

1-1. 회원가입 신청서

## 2. 인증 절차

## 3. 인증라벨 신청서 접수

3-1. 인증라벨 신청서

3-2. 인증 라벨 접수 및 사용 안내

3-3. 시험분석기관 안내 : 바이오매스, 생분해 시험, 중금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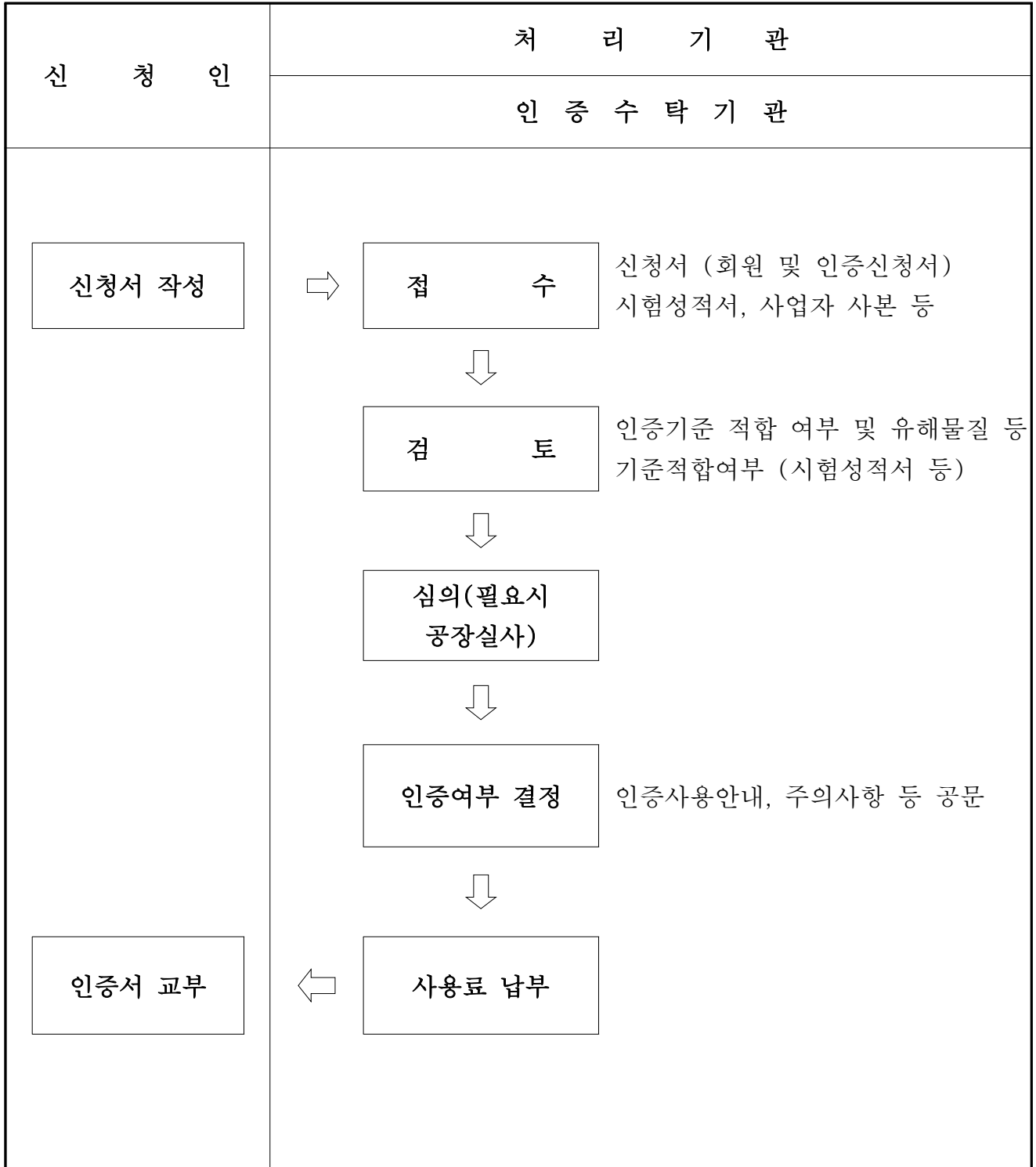
## 4. 협회 자료

4-1. 협회 통장사본

4-2. 협회 고유번호증



## 2. 인증 처리 절차





※ 일반사항

같은 대상제품군에 2개 이상의 제품을 신청할 경우에는 1장의 신청서에 작성하여도 됨.

※ 신청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 및 생산·판매량을 기재하되, 전년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연도 추정치 기재

3-1. 인증라벨 신청서

	신청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설립 연월일
⑤ 자본금		⑥ 담당자 성명 담당자 이메일
⑦ 주 소	본 사	(전화 : ) (팩스 : )
	제조공장	(전화 : ) (팩스 : )
※ 위탁생산으로 제품 생산시, 제조공장의 주소와 해당 제조업체명을 기재할 것		

⑧ 대상 제품군	⑨ 상품(브랜드)명	⑩ 용 도
KBMP-BBP-001 바이오 베이스 수지 및 제품		
⑪ 신청제품 매출 (판매 예상량)	전년도 매출 _____	신청년도 예상매출 _____
	전년도 생산량 _____	신청년도 예상생산량 _____
상기와 같이 인증 라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귀하		
<구비서류> 1. 일반사항 및 당해 제품의 환경성, 품질관련 자료 2. KBMP 인증 기준 규정에 따른 자료	수수료	처리기간
	협회 기준 금액	30일



기업유형①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판매 <input type="checkbox"/> 제조/판매 <input type="checkbox"/> 가공판매 <input type="checkbox"/> 가공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판매 <input type="checkbox"/> OEM판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담당부서 / 직위 인증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E-mail	
설립 년월일		주요 생산 품목	
신청제품 매출	전년도( 월 ~ 월)		(억원)
	금년예상		(억원)
주요 수요(구매)처		홈페이지 주소	
동일용도 제품의 주요 생산업체 현황	주요 업체명	제품명	소비자가격(원)
신청제품의 제품 환경성 관련 특장점	※ 작성안내 : 동일용도 기존제품을 대체하였을 때 얻어지는 환경오염 저감효과 나 자원절약 효과를 비교(시험데이터, 관련 증빙자료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		
신청제품의 용도 및 품질 관련 특장점			
품질관련 기준 검증을 위한 환경표지제도와 동등 수준 이상의 신청제품별 품질 규격 정보 (주1, 주2, 주3 참조)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주1) 신청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우수재활용제품인증규격(GR)이 있는 경우, 해당 KS 또는 GR 규격명 기재할 것 주2) 신청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우수재활용제품인증규격(GR)이 없는 경우,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 제품에 대한 KS 또는 GR 규격명을 기재할 것 주3)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 제품에 대한 KS 또는 GR 규격도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을 되는단체 규격 및 인증 규격명을 기재할 것		





# 신청 제품 내역서

KBMP-BBP-001: 2011  
Edition V 2.0 (2021.07.14)

구분	제품명	용도	사진	규격(치수)	공장도가격 [원]	소비자가가격 [원]	전년 또는 예상 매출액 [만원]*
1							
2							
3							
4							
5							
6							
7							
8							

- ※ 개별 제품 매출액은 인증승인 후 통계 작성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별 제품 전년 매출액이 없을 경우 금년 예상 매출액(인증 후 1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제품 종류가 많은 경우, 칸 추가 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 인증 라벨 사용인증을 위하여 신청한 제품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제품의 용도는 당사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므로, 해당 제품의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제품 용도가 '인증기준 적합여부 검증단계'에서 별도의 협의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일 시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증라벨 취득 후 약정기간 동안 제품 카탈로그 및 홍보물에 해당제품의 인증사유 및 소비자정보 대하여 표기할 것이며, 인증 라벨 도안을 카탈로그 및 홍보물 또는 제품에 표기할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사유와 함께 표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사항을 불이행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인증 라벨 무단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사에서 모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일 시 :

업체명 :

대표자 :

(인)



1. 인증 라벨 사후 관리

: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불시 랜덤 샘플링을 통해 다음사항을 조사한다.

1) 인증제품 인증기준 준수여부 조사를 아래와 같이 최대 2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며, 부적합 시 인증을 취소한다.

1단계 : 최초 인증 시 제출한 제품과 랜덤 샘플링한 제품의 동일 재질 여부 확인한 후 동일제품이 아니라고 협회에서 판단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FT-IR, NMR 등을 통해 협회에 자료를 비치하고 일치여부 확인

2단계 : 협회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성적 의뢰 (비용은 수혜자 부담 원칙)

- 시험성적 결과 협회 인증 기준 부적합 시 인증취소

2) 인증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에 대한 인증기준 지속 유지 여부

3) 인증 라벨의 표시나 광고내용의 적절 여부 및 도안 표시 규정 준수 여부

4) 인증 라벨 무단사용 조사, 인증 라벨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품에 인증 마크 도안을 부착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5) 인증 라벨은 제품단위로 인증하므로 같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상표명 및 원료가 다른 경우 인증 라벨을 사용할 수 없음

6) 인증 라벨 인증이 종료된 제품에 인증 라벨을 부착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위 사항을 불이행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인증 라벨 무단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사에서 모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일 시 :

업체명 :

대표자 : (인)

## 3-2. 입증 라벨 접수 및 사용 안내

### (1) 입증 라벨 접수

#### (가) 접수시 제출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신청서 1부 (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 3)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증빙서류 각 1부  
- 중금속, 식품용기기준 등 인체유해성 관련 서류는 1년 이내 발급된 서류
- 4) 신청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 및 이나 그림이 표시된 제품 소개서 1부 (기존 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

#### (나) 기존 타사의 인증받은 원료 또는 제품 인증을 이용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상기 3)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확인 서류제출을 하지 않고 아래 서류 제출로 가름한다
- 제조사 동의서(필요시) 1부, 인증마크 사용 권리자 동의서(필요시) 1부, 기 발급받은 인증서(필요시) 1부, 매입 세금계산서(필요시) 1부

(2) 입증 라벨 사용권리 : 사용권리는 인증 서류 접수자 또는 인증 보유자에 있다.

### (3) 입증 라벨 사용 재약정

- 가) 인증 취득 후 2년을 인증 약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 나) 약정 유효기간 종료 후 인증 라벨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일 이전 해당 제품이 현행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다) 재약정에 대한 절차 및 비용은 협회의 기준에 따른다.

## 3-3. 시험분석 기관 안내

### (1) 바이오매스 함량 시험

- 베타 한국사무소 : [www.betalabservices.com](http://www.betalabservices.com) / [ycho@betalabservices.com](mailto:ycho@betalabservices.com)
- 한국의류 시험연구원 : [www.katri.re.kr](http://www.katri.re.kr)

### (2) 생분해 시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http://www.ktr.or.kr)
- KOTITI 시험연구원 [www.kotiti-global.com](http://www.kotiti-global.com)
- (주)씨티케이 [www.e-ctk.com](http://www.e-ctk.com)

### (3) 중금속, 인체무해, 식품용기포장기준 등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 SGS 등

#### ○ 국내외 인증 업무 수행 기관 (해외 인증 대행업무 포함)

- SZU KOREA (에스지유한국지사) : 연락처 [mjpark@szukorea.com](mailto:mjpark@szukorea.com)

4-1. 협회 통장사본

사단법인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인감**

계좌번호 **614-009117-01-013**

예금종류 **대한민국소UP통장**  
보통예금

**중소기업은행**  
인감  
도  
서  
명  
중소기업은행

서명거래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일련번호 **1**

신규일 **201년 02월 10일**

발행일 **201년 02월 10일**

신규점 **부천테크주 032 624 2581**

발행점 **부천테크주 032 624 2581**

BC 결제	인터넷	텔레 뱅킹	계좌 이체	지로 이체	CD 카드

**텔 레 뱅 킹**

전국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 **1566-2566**  
**1588-2588**

◆ 자주사용하는 서비스 및 코드

서비스 종류	코드	서비스 종류	코드
조 회	무통장입금	본 실 신 고	비씨 및 체크카드
	잔액		스마트현금카드
	BC이용한도		통장 및 인감
이 체	환율	기 타	자기앞수표
	당·타행송금		입출거래내역팩스통지
	대출이자 원리금 납부		거래확인증팩스통지
	BC 현금서비스		텔레뱅킹 비밀번호 설정

\* 서비스 중 "각종 조회 및 사고신고 등"은 별도의 가입 없이 전화로 이용할 수 있고 "각종이체"는 텔레뱅킹에 가입하셔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 터 넷 뱅 킹**

[www.ibk.co.kr](http://www.ibk.co.kr)

대한민국정부 인 지 세 100원  
남대문서우서장 선납송인 2010년 175호

◆ 은행별 코드안내

은 행 명	코드	은 행 명	코드	은 행 명	코드
기 업	003	상 호 저 축	050	S C 제 일	023
경 남	039	새 마을 금 고	045	제 주	035
광 주	034	수 협	007	하 나	081
국 민	004	신 한	088	한국씨티	027
농협중앙회	011	신 협	048	도 이 치	055
단위농협	012	우 리	020	에이비엔엠포	056
대 구	031	우 채	071	H S B C	054
부 산	032	외 환	005	B O A	060
산 업	002	전 북	037		

4-2. 협회 고유번호증

# 고 유 번 호 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고유번호 : 124-82-19683

단 체 명 : 사단법인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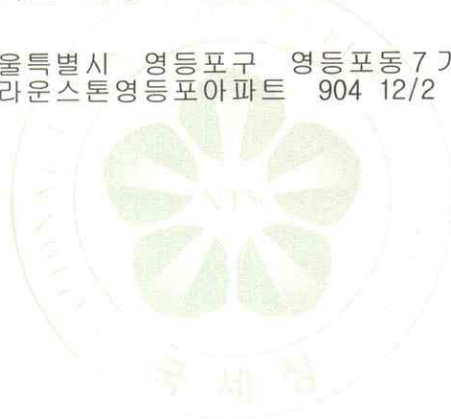
대표자 성명 : 유영선

법인등록번호 : 134821-00\*\*\*\*\*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944

대표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 가 202  
브라운스톤영등포아파트 904 12/2

교 부 사 유 :



(유의사항)

-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1 년 03 월 07 일

수원 세무서장



국세청

